

<자료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ILO 전문가위원회 권고>

(5) 2001년 72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 (2002년 총회보고)

1. 이전 권고에 추가하여, 본 위원회는 2001년 5월 6일에 전일본조선기계노동조합으로부터 접수한 의견-그 사본은 2001년 6월 26일에 (일본)정부에 송부하였다-과, 노동조합의 의견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견을 기재한 2001년 10월 9일자 서신에 유의하고 있다.

2. 본위원회는 전쟁과 관련한 보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일조약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종료하였고 국가차원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도 종료하였다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보상받을 권리까지 종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2001년 6월 의견에서 전일본조선기계노조가 지적한 점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 이하에 인용한 노조측의 통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정부는 여러차례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설시하고 있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 종료 이후 오랫동안 대한민국(남한)과 중국과 외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개별적인 희생자에 대해 일본 및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은 오늘날까지 쌍무적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지 못하다.

1992년 일본정부는 이들 희생자들이 배상을 지급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당시 일본외무성 장관이었던 슌지 야나이는 8월 27일 중의원 예결위원회에서, 1965년 한일조약은 국내법적 의미에서 보상을 청구할 권리까지 개별 희생자에 대해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조약은) 한일정부가 국내법적 권리의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뿐이다”고 야나이는 답변하였다. (일본)정부입장의 태도변화는 일본 법정에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환언하면, 일본 정부는 보상을 청구할 개별적인 (법적) 권리는 수십년전의 쌍무적 조약에 의해 무효로 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였던 것이다. 야나이의 발언이 있기 이전에 (일본)정부 관리는 그 효과에 대해 두 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원자탄희생자소송에서의 일본 정부의 진술 (1963년 최종판결)

“5.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있어서 배상청구권의 포기

샌프란시스코조약 19조 (a)항은 개별적인 일본 국민이 트루먼이나 미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일본국이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19조 (a)항은 노조의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9조

(a) 일본은 연합국과 그 국민에 대한, 전쟁상태의 존재로 인해 취해진 행위 또는 전쟁에서 기인하는 일본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며, 평화조약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일본 영내에서 이루어진 연합국 군대 또는 당국의 존재, 활동 또는 행위에서 기인하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2. 시베리아억류자보상소송에 대한 (일본)정부 진술 (1989년 최종판결)

“일본과 소련간의 공동선언에 있어서 제6조 제2항 소정의 배상청구권조항의 포기 원고는 소련에 대해 일본은 모든 청구권을 법적으로 또는 일본과 소련의 공동선언의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선언 9조 2항에 의해 일본이 포기한 권리는 일본국의 외교적 보호의 권리와 청구권이, 개별적인 일본국민의 청구권이 아니다. 외교적 보호의 권리라 함은 외국측의 국제법 위반으로 인하여 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일본 국민의 손해에 대해 외국의 책임을 추급할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가의 권리를 의미한다.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일소공동선언에 기하여 개별적인 일본 국민에 속하는 어떠한 권리를 포기한 바 없다.“

2001년 6월 의견에서 전일본조선기계노조는 본위원회의 이전 권고 12항에서 언급된 하나오카판결에서 이루어진 화해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코멘트를 제공하였다.

3. 2001년 10월 9일 서신에서 일본 정부는 2001년 6월 6일자 전일본조선기계노조의 의견에 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점에 있어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고 있으며, 2002년에 개최될 예정인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회기에 앞서 ILO에 의견을 송부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일본)정부가 어떠한 문제를 조사할 것인가의 기초 위에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본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충분히 유의하고 있다. 본 위원회의 이전 권고에서 본위원회는 당시 수감자들과 기타 다양한 법정에서 징송중인 다수의 청구가 여전히 계류중에 있었다는 것에 유의하고 있었으며, 희생자들의 나이와 시간이 급속하게 흐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정부는 충분한 방법으로 이러한 자의 청구에 대해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1년이 경과한 지금 본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2002년 90차 회기에서 총회에 대하여 전일본조선기계노조의 의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함께 전쟁 “위안부” 및 기업에 의한 강제근로에 근거한 청구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